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64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21. 12. 16. 공포 및 2022. 1. 13. 시행)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통장의 임기, 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 규정 삭제(현행 제4조 및 제5조 삭제)
- 나. 명예반장 규정 삭제(현행 제6조 삭제)
- 다. 통장 위촉을 통장 임명으로 변경(안 제7조의2)
- 라. 위촉장 서식 삭제(현행 별지 서식 삭제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2022. 1.13. 시행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
- 현행 조례에서 통장의 임기 및 통·반장의 위·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규정을 삭제함
- 아울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안 제7조의 통장 ‘위촉’을 통장 ‘임명’으로 변경하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제1항¹⁾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,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1)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[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]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2. 14.] [대통령령 제33966호, 2023. 12. 14., 일부개정]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